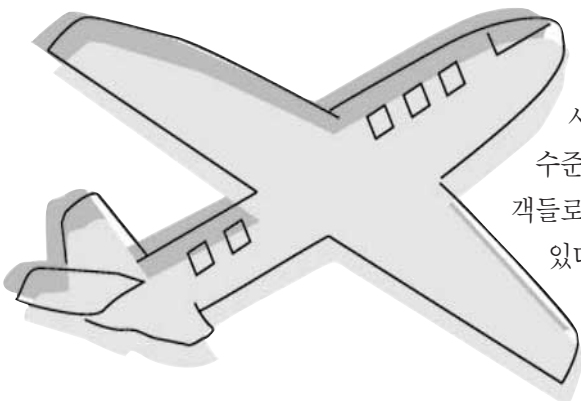


카메라·노트북 컴퓨터 등은 휴대하는 것이 안전

■ 글/오승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대고 있다. 즐거운 해외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수화물 분실 사고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수화물에 고가품을 많이 휴대한다고 소문이 나 절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분실 사고가 잦은 이유 중의 하나다.

수화물 분실 사고는 직항 노선보다는 연결 노선에서 많이 일어난다.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미국의 뉴욕·시카고·LA 등에 직접 연결되는 항로는 10만명당 10건 정도 분실 사고가 생기는데 비해 미국 항공사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우에는 5천명당 10~20명으로 분실 사고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물을 분실하면 정신적 피해도 피하지만 금전적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항공 여행중 수화물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액은 국제 운송 항공인 경우 대부분 항공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다.

바르샤바 조약에는 위탁 수화물에 대해 1kg당(여객 1인) 20달러로 돼 있다.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화물의 허용량은 이코노미클래스가 20kg이므로 보통 4백달러가 배상 한도액이다.

스위스에서 국내로 입국한 김성한 씨는 호텔에서 사용하던 칼 세트를 수화물로 맡겼다가 분실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다. 항공기 탑승 당시 기내에 칼을 휴대하고자 했으나 승무원의 권유로 수화물칸에 실었다가 분실했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 칼 세트가 없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자사 규정에 따라 30만원 보상을 제의했다. 칼 세트는 1백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이씨가 국내 호텔에 취업하여 사용하려고 길에 들여놓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물품이다.

이만호 씨는 러시아에서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다가 서류 가방을 분실한 경우. 무료 탁송 수화물의 허용 중량인 20kg으로 환산, 1kg당 20달러씩 계산해 4백달러 보상 받았다.

실제 분실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수화물을 위탁할 때 내용품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신고액 1백달러당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최고 2천5백달러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 여행객이 내용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분실물에 대한 보상은 받기가 어렵다.

해외 여행시 알아두세요

- ◆카메라·노트북 컴퓨터 등 고가품은 손가방에 휴대하거나 수화물을 부칠 때 신고하는 것이 좋다.
- ◆고가품이나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절도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
- ◆직항 노선보다 연결 노선이 수화물 분실 위험이 더 높다.
- ◆분실 즉시 항공사에 신고해 사후 조치에 대비한다. ☎